

예 산 총 칙

2017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372,411,438 | 41,172,343 |
| 일반회계 | 1,249,726,847 | 37,491,805 |
| 특별회계 | 122,684,591 | 3,680,538 |
| 기타특별회계 | 122,684,591 | 3,680,538 |
| 공유재산관리 | 38,205,810 | 1,146,174 |
| 의료급여기금 | 5,576,925 | 167,308 |
|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| 1,319,000 | 39,57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| 244,902 | 7,347 |
| 교통사업 | 39,993,151 | 1,199,795 |
| 철도건설사업 | 11,716,659 | 351,500 |
| 폐기물처리시설 | 7,549,990 | 226,500 |
| 도시재정비촉진 | 1,281,662 | 38,450 |
| 도시개발 | 4,243,385 | 127,302 |
| 기반시설 설치 | 4,410,060 | 132,302 |
| 도시재생 | 8,143,047 | 244,291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'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'와 같다.
단,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.

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'채무부담행위조서'와 같다.

제 4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'계속비사업조서'와 같다.

제 5 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'명시이월사업조서'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,811,819천원으로 한다.
(1)일반예비비 6,811,819천원
(2)재해·재난목적예비비 2,000,000천원

제 7 조 201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1,600,000천원으로 한다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지방채상환(원리금 등),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